

建設工事制度改善 및 不實對策

建設工事의 不實施工은 建設業계가 內包하고 있는 構造的인 病理現象에 基因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政府는 경제기획원을 주축으로 하여 關係官으로 구성된 「建設工事制度改善 및 不實對策委員會」에서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87. 2. 9일 확정하였다.

制度改善 및 不實對策이 앞으로 시행됨에 따라 參考資料로 주요 내용을 발췌했다. <編輯者 註>

1. 推進經緯

-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建設工事의 부실시공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나아가 建設業의 장기적인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하게 되었음.

- 이를 위하여 지난해 9月 經濟秘書室의 요청에 따라 關係官으로 建設工事制度改善 및 不實對策委員會를 구성, 실무작업을 추진하여 12月末 대책시안의 작성을 완료하였음.

- 同 試案을 중심으로 關係官의 의견을 최대한 收斂하고 關係官협의, 黨政協議를 거쳐 최종대책안을 수립하였음.

2. 建設業 一般현황

- 建設業은 사회간접자본형성 등을 통해 국민경제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이에 따라 建設業의 국민경제적 비중도 증대되어 국민총생산의 8.6%, 총취업인구의 6.1%를 차지하고 있음.

- 建設工事中 公公公사는 전체 공사금액의 56.2%를 차지하여 政府의 建設공사제도 및 운

용이 建設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

- 최근 中東建設의 퇴조에 따라 海外建設受注額이 격감하고 있어 해외진출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서는 美州地域 등으로의 진출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시공위주의 建設業 육성외에 建設業의 획기적인 향상이 불가피함.

- 또한 뉴라운드협상과 관련, 선진제국의 주요관심의제인 서비스 분야에 建設業부분도 포함되어 국내건설시장에 대한 개방압력이 집중되고, 建設需要樣狀도 기술집약형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설계·시공·감리를 일관한 종합적인 建設業의 육성·발전이 주요한 당면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3. 工事不實의 요인

- 建設業의 量的成長에도 불구하고 시공의 質的向上을 위한 노력이 소홀히 됨으로써 부실공사의 문제는 그간 建設業 전반의 문제점으로 존재하여 왔으며, 최근의 독립기념관 화재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이 재인식되고 있음.

- 工事不実의 요인은 공사에 관련된 모든 주체에 의해 야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요인이 서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책임한계가 모호하여 不実施工의 근원적인 치유가 어려운 여건임.

주체별 부실요인

政 府	業 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나친 능률위주의 행정풍토 • 國庫節約 중심의 계약입찰관행 • 정부우위의 不公正去來 • 감독·평가기능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당 수주경쟁 • 不當下都給 • 책임시공체제 결여 • 監理能力·책임결여

- 가장 심각한 문제는 工事不実要因이 일부 공사를 중심으로 한 예외적인 현상이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建設事業의 전단계에 걸쳐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事業段階別 부실요인

사업계획·예산: 무리한 사업기간, 부적당한 사업비
조 사·설 계: 기간과 예산의 제약으로 인한 설계누락
입찰·계약: 덤핑입찰, 계약조건의 불평등, 緣故權에 의한 수의계약
下 都 給: 低價下都給, 下都給者의 전문성 결여
施工·사후관리: 책임시공의식 부족, 감리·감독 불철저, 사후 평가제 미흡

- 따라서 건설업계에 내재하는 불건전한 풍토와 정부의 불합리한 制度 및 관행을 획기적으로 시정하지 않고서는 不実施工의 근절이 곤란한 실정임.

4. 對策의 기본방향

- 建設工事의 부실요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및 업계의 建設工事に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전환되어야 함.

• 정부는 지나친 절약과 능률위주의 행정풍토에서 벗어나 값을 제대로 주고 工期도 적정하게 부여하는 한편, 업계도 이에 대응하여 덤핑입찰 등 不健全한 去來風土를 시정하고 확고한 匠人精神을 가지고 시공에 임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인식전환의 바탕위에 향후 우수시공의 확보와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는 그간 제5 공화국의 경제정책의 基調가 되어 온 「自律·競爭·開放」의 방향에 맞추어

• 장기간 동결되어 온 免許를 점진적으로 개방하여 경쟁체제를 확립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의 성장과 부실기업의 도태를 유도하고, 건설업체제도 용역이 主導하는 선진건설구조로 전환하여 개방체제에 대처토록 하며,

• 入札 및 계약제도에 있어서는, 價格外에 시공기술·능력 등을 낙찰조건으로 고려하는 綜合落札制의 도입을 목표로 현행가격 위주의 입찰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 이러한 政府의 노력에 대응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책임시공을 유도하되 부실시공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감리·감독을 강화하고자 함.

5. 改善對策

(1) 免許制度의 정비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建設業免許는 도급대상인 공사내용에 따라 토목·건축 등 전반적인 공사를 할 수 있는 일반건설업, 포장·조경 등 특수건설업과이 두 분야를 19種의 細部工種으로 나누어 하도급을 주로 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고 있음.

• 一般建設業체는 1958年 免許制 도입 이후

1962년에는 1,700여개에 달하여 과당경쟁 등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수차례에 걸쳐 면허기준을 강화하여 왔고, 특히 1974년에는 新規免許發給을 중단하여 1986年末 현재 483개로 줄어든 상태에 있음.

• 한편 建設業의 系列化·전문화 촉진을 위하여 1976년에 신설된 專門建設業免許에 의한 전문건설업체는 면허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1976년의 658個에서 1984年末에 4,900여개로 증가하게 되어, 1985년 이후 신규면허 발급을 중단하여 1986년 현재 4,600여개 업체에 달하고 있음.

- 일반건설업면허가 장기간 동결되어오며 따라 면허가 특허화되어 免許讓渡時 약 7 억원의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있고, 민간주택 建設工事의 경우 총공사액의 2~3%에 해당되는 대여료를 주는 면허대여가 일반화되고 있으며, 특히 일부업체는 시공보다 면허대여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아울러 專門建設業體의 경우, 능력과 시공 경험을 갖고 있는 우수업체가 다수 있음에도 일반건설업 신규면허취득의 길이 막혀 있으며, 주택사업자의 경우 國內住宅建設의 75%를 공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권이 부여되지 않는 등 건설업면허를 둘러싼 구조적인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음.

- 또한 포장·조경 등 특수건설업의 경우, 전문건설업과 성질상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면허를 인정함으로써 특수건설업면허 보유여부가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음.

- 특히 전문건설업의 경우 영세한 업체가 난립하고 있으며 해당공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수준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 나아가 선진국의 건설업은 단순한 施工뿐이 아닌 조사·설계·감리 등이 결합된 종합건설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공보다는 設

計·監理 등 기술집약적인 분야를 강화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도 해외건설에 있어서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종합건설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임.

(改善對策)

- 1974年 이후의 지속적인 면허동결에 따라 면허가 기존업체에 대한 温床役割을 하게 됨으로써 업체가 과보호되어 競爭力強化나 체질개선노력을 소홀히 하여왔고 특히 일부업체의 부실화가 심화되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이들 업체를 정비하는 한편, 능력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新規免許를 발급해줌으로써 건설업의 체질개선을 도모함.

- 그러나 일시에 과다한 신규면허를 발급하는 것은 기존업체에 미치는 충격이 크기 때문에 일정한 공사경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건설업체, 주택사업자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신규면허가 발급되도록 함.

- 아울러 업계 스스로 免許開放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年間이라는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1989년부터 제한적으로 신규면허를 실시하도록 함.

- 이 과정에서 建設業免許基準을 상향 조정하는 한편, 特殊建設業은 폐지하고 전문건설업의 경우 해당분야의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기술수준을 갖추어 전문성을 살려 나가되 특히 기계설비와 같이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 향상에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精銳化 하는 등 新規免許發給을 위한 업계정비를 도모코져 함.

- 또한 新規業體參與에 따른 업계질서가 정리되는 1990年부터는 기술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용역중심으로 건설업을 전환하여 건설시장의 開放化 및 국제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종합건설업을 도입토록 함.

(2) 入札·契約制度의 개선

〈現況 및 問題點〉

- 현행 정부공사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제한 경쟁, 지명경쟁, 수의계약이 있으며 낙찰자 결정은 10億원 이상인 경우에는 最低價落札制를, 10億원 미만인 경우에는 敷札制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 현행 제도하에서는 가격요인만에 의해서 落札者를 결정하기 때문에 덤핑입찰이 성행하고 업체의 기술개발 및 품질향상 노력을 유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예정가격을 모르고서는 사실상 낙찰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예정가격의 입수를 위한 부조리가 만연되고 있음.

- 또한 현행 입찰제도에서는 競爭制限要素가 지나치게 많은 바,

- 制限競爭 入札時에 특정지역에서의 공사실적 등 과도한 제한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특정업체에 낙찰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례가 많음.

- 政府發注工事中 60%가 수의계약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계속공사를 분할하여 발주할 때 시공자가 달라질 경우 前施工者와 後施工者間의 공사에 대한 하자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없다는 이유로 연고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기인함.

- 한편 예정가격 산정에 있어서는 政府勞賃單價가 시중노임에 비하여 약15% 낮은데다, 시공현장에서 실제 발생하는 현장관리비, 품질관리비 등이 계상되지 않아 適正工事費의 확보가 곤란함.

- 契約에 있어서는, 계약조건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는 政府의 판단에 따른다는 등 정부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조건이 되어 있으며, 施工者에게 설계에 없는 추가공사를 무상으로 시키거나 준공식 등 각종 공사관련 행사비 등을 부담시키고 있음.

- 나아가, 덤핑入札과 공사비의 부족은 低價下都給 또는 設計圖面上의 적정량보다 적은 자

재 투입을 정부가 유도하는 결과가 되어 불건전한 原·下都給關係 및 부실시공을 야기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라고 되고 있음.

〈改善對策〉

현행 각종 모순을 갖고 있는 最低價 낙찰제를 1990년부터 입찰가격 이외에 業體의 기술능력, 시공경험, 성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종합낙찰제로 전환하여 덤핑입찰을 막고 기술경쟁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함.

- 最低價落札制에서 綜合落札制로의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 현재 토목공사에만 실시하고 있는 內訳入札制를 1988년부터 건축공사에 대해서도 확대 실시하고

- 낙찰자 결정에 있어서도 현행 총액기준에서 內訳金額 기준으로 전환하며,

- 충분한 견적기간을 부여하는 동시에 설계 도서를 미리 배부하여 충실한 견적이 될 수 있도록 함.

- 현재 업체의 창의와 기술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정되고 있는 代案入札은, 發注官署가 절차의 번잡 등을 이유로 이를 기피하거나 代案提示의 허용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여 운영함으로써 유명무실해지고 있는 바, 代案入札의 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로 확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공사부분도 확대하여 代案入札制度가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함.

- 수의계약의 가장 큰 사유인 瑕疵責任 불분명의 경우에도, 차기공사 낙찰자가 하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경쟁계약을 체결토록 함으로써 隨意契約 事由를 축소함.

- 정부노임단가를 단계적으로 市中勞賃水準으로 인상하고, 지금까지 공사원가 계산시 누락되어온 품질관리비를 계상해 주며, 공사원가의 계산시 누락되어온 품질관리비를 계상해 주며, 공사원가의 일정율로 낮게 책정되어 있는 一般管理費 및 기타경비를 상향조정하는 등 政

府原價計算制度를 가능한 한 기업회계원칙에 따른 원가체제를 전환함으로써 적정공사비를 보장코자 함.

- 또한 현재 財務官이 설계도면을 기초로 작성된 예정가격을 國庫節約과 豫價 누설방지를 위해 관례적으로 2~3%를 삭감하여온 사례가 많은 바 앞으로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삭감토록 함.

- 시설공사계약 일반조건 중 불평등조항을 개선하고 公共部門公正化 지침을 제정·운영함으로써 不正當去來橫行에 대한 시정을 유도토록 하며, 공사분쟁 발생시에 조사·仲裁·조정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현재 건설업법에 근거만 마련되어 있는 建設業紛爭調停委員會의 설치를 위한 별도 입법을 추진코자 함.

(3) 責任施工·監理体制의 확립

가. 監理·감독의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발주기관은 시공자의 誠實施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을 감독관으로 정 하여 현장에 파견하고 시공확인 및 점검업무를 담당토록 하고 있으나 기술능력 부족, 지나친 행정업무 등으로 부실예방과 품질관리 등 본래의 감독업무에는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음.

	建設部(地方廳)	서울市(建設本部)
• 事業費(億원)	3,628	6,267
• 監督人員(名)	264(13.7億원/人)	242(25.9億원/人)

※ 감독 1人當 적정사업비는 2~3億원 수준임.

- 감독관의 능력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건축사나 技術用役業者를 감리사로 선정하여 감독관의 업무를 代行시키는 감리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 이 경우에도 施工者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인 설계변경확인, 기성고확인 등의 업무를 감

독이 수행함으로써 施工者가 監理者의 지적에 따르지 않는 등 감리의 형식화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監理施工의 역사가 일천하고 監理技術도 부족하여 실제시공에 관해 시공자가 더 전문성을 갖는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감리를 설계도서 보완 등 설계부수업무로 인식하여 품질관리 측면을 소홀히 함으로써 감리제도가 정착되지 못한 실정임.

〈改善對策〉

- 民間監理專門會社를 신설·육성하되 일정수의 施工技術士 등 기술자보유를 의무화하고 外國先進監理業체와의 합작투자 등을 장려하여 민간의 감리능력 향상을 도모토록 함.

- 기존 용역업체나 建築士事務所도 適正施工技術者 등을 보유토록 하여 감리능력을 확충하고 감리업체간 경쟁을 유도하여 監理水準의 발전을 도모함.

- 이러한 民間監理機關의 육성에는 상당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민간의 감리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조달청 및 정부투자기관의 감리능력은 현행대로 활용기로 함.

- 또한 현재까지는 감리업무가 설계보완업무에 치중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공과정에 있어서의 適正資材의 사용여부 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공사의 질이 향상되도록 함.

- 아울러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현재 감독자가 가지고 있는 既成檢査 확인 및 설계변경 확인권한 등을 감리자에게 부여하여 감리자의 권한을 강화하되 중대한 부실감리에 대하여는 업체등록 및 기술자자격을 취소하여 公務員과 마찬가지로 변상책임을 지도록 함.

- 나아가 감독의 빈번한 인사이동을 지양하여 전문성을 제고시키며 업무량을 적정화하고, 필요한 경우 工事監督팀을 구성·운영함으로써 감독업무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함.

나. 評價制度의 확립

- 監理・監督의 강화로 부실시공을 현장에서 지적・시정하도록 함과 동시에 시공완료후에도 시공의 성실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우수업체에게는 指名競争入札參加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부실업체에게는 入札參加 자격제한, 영업정지 또는 면허취소 등 제재조치를 강구하고자 함.

(4) 原・下都給關係의 健全化

〈現況 및 문제점〉

- 일부 대기업의 경우 下都給業체 등록제를 실시하여 등록된 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고 대부분의 기업은 사전등록을 받지 않고 공사수주때마다 개별적으로 下都給者를 선정하여 일시적인 거래에 그치기 때문에 상호불신・횡포 등이 발생하는 등 협력체제를 발전시키지 못하고 있음.

- 下都給者의 선정에 있어서도, 현재는 原都給者가 공사의 낙찰을 받은 후 임의로 下都給者가 선정되거나 지나치게 낮은 하도급대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적극적으로 이를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결여되어 있음.

또한 下都給代金の 지급이 법정기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경우 발주자가 직접 下都給者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原都給者의 승낙이 있는 경우나 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고 있어 제도가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

〈改善對策〉

建設下都給系列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등록의 방법, 등록업체에 대한 특전 등을 규정하는 建設下都給系列化 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우수한 系列化 시행업체에서는 업체 평가에 반영하는 등 계열화의 誘因을 제공함.

이러한 계열화를 바탕으로 하여 입찰시 原都

給者가 하도급업체, 工種, 금액 등을 명시한 하도급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附帶入札制을 실시함으로써, 발주자가 하도급자의 선정에 제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부실시공을 사전에 예방함.

• 다만 업계의 전적능력이 부족하여 同 제도의 수용태세가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하므로 1988년부터 임의규정으로 우선 下都給業체 및 下都給工種만 제출토록 하되, 2~3년간의 시행 실적과 효과 등을 감안하여 여건이 성숙되면 하도급금액 등을 포함한 명실상부한 附帶入札制을 의무화하도록 함.

나아가 原都給業者가 파산 등으로 지급 불능 상태에 처하거나 下都給者로부터 법정기일이 지난 후 2~3회의 독촉이 있어도 하도급 대금이 지급을 기피하는 경우에도, 발주자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할 수 있도록 하여 하도급자의 보호를 강화함.

(5) 建設技術의 振興

〈現況 및 문제점〉

건설기술의 관리기능이 여러 부처로 분산되어 있고 관련규정도 大統領令 및 部分 등으로 多岐化되어 있기 때문에 시공기술과 調査・設計 등 용역기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지 못하고 있음.

구 분	관 리 부 서	근 거 규 정
시 공 기 술	건설부, 동자부 등 각부처	건설업법, 전기공사업법 등 각 개별법령
용 역 기 술	건설부, 과학기술처	건축사법 技術用役育成法

조사・설계 등 用役技術水準이 시공기술에 비해 특히 저조하여 국내공사중 특수기술이나 工法이 필요한 경우 外國業체에 의존하는 사례가 많으며 건설시장 개방시 가장 큰 타격이 예상

되는 부문은 建設技術用役 부문임.

최근 건설시장의 다변화를 위한 선진국시장 진출이 불가피한 바, 國內建設業體 및 技術用役業體가 외국업체에 대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획기적인 기술수준 제고가 불가결함.

(改善對策)

建設技術管理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건설부 장관이 건설기술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監理·監督 등 품질관리와 관련된 제규정의 통일적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공사의 품질을 제고함.

技術用役育成法 등 관련법령의 改正을 통해 건설부가 기술용역을 적극 지원·육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공과 건설기술용역의 연계 발전을 도모함.

민간기관으로 운용되고 있는 건설기술관련 연구기관인 韓國建設技術研究院에 대한 정부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공공연구사업의 우선 위탁을 통하여 同研究院을 육성함으로써 건설기술 개발을 위한 중추기관으로 활용되도록 함.

國內의 設計·감리수준을 적극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용역업체와의 기술제휴 또는 합작투자를 적극 유도하고, 建設技術用役業의 등록기준을 상향조정하되, 주기적으로 등록을 更新토록 함으로써 기준미달업체는 도태되도록 함.

(6) 其地對策

가. 건설사업 시행절차의 法制化

建設事業施行規程을 제정하여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설계가 완료된 후 예산에 반영토록 하며, 용지보상 등 필요한 조치후에 착공이 되도록 하는 적정 사업기간이 확보되도록 함.

나. 設計審査制度의 內實化

設計審査委員會의 구성이 非常任 민간위원 중심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심사기간도 짧

아서 책임있는 심사가 되자 못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公務員委員 및 常任民間委員을 위촉하여 활용하고, 심사기간을 충분히 부여하는 한편, 사전심사를 통해 重點審査項目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기본설계를 심사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심사하는 경우, 심사결과 실시설계내용의 변경이 있을 때는 기본설계부터 다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및 예산이 낭비되므로 양자에 대해서 모두 심사를 하도록 하며, 그동안 자체심사에 맡겨 부실요인이 되어온 정부투자기관 시설공사에 대하여도 一定規模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심사위원회의 설계심사를 실시함.

다. 監査方向의 전환

원래 會計監査制度는 國庫節約側面에 중점을 두어 시행되는 것이 감사의 본질에 합당하나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운영되게 되면, 施工者의 창의 또는 기술개발에 의한 공사비절감이 있는 경우에도 절감분이 감액 조치되어 그 실익이 기업체에 돌아가지 않음으로써 기술개발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또한 타당한 이윤이 있는 경우에도 發注官廳의 담당관이 감사시의 지적을 우려하여 공사비 증액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감사방향도 국고절약측면에서 부실공사방지 및 기술개발 차원으로 전환하여 일선기관의 소극적인 행정분위기를 쇄신시켜 주어야 할 것임.

6. 推進計劃

(1) 免許制度의 정비

1987년부터 1988년 상반기까지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1989년에는 제한적으로 신규면허를 실시.

(2) 入札·契約制度의 개선

1987年 상반기중 예산회계법시행령 등 계약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1988年 상반기에는 内訳入札制를 확대, 실시하고 1990년에는 最低價落札制를 종합낙찰제로 전환.

(3) 責任施工·감리체제의 확립

1987年 상반기중 監督·監理關聯規程을 정비하고 1987年中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여 1988年부터 새로운 책임시공·감리체제로 이행

(4) 原·下都給關係의 건전화

1987年 상반기중 下都給系列化指針을 제정·시행하고 이를 토대로 1988년에는 부대입찰제를 도입하며 아울러 下都給代金 直拂制를 확대 추진.

(5) 建設技術의 진흥

1987年 하반기까지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技術用役育成法도 개정.

7. 綜合結論

수십년간 痼疾化된 건설업의 不健全한 풍토에 비추어 볼 때, 금번 대책이 제대로 효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單純한 제도개선의 차원을 넘어서 건설업 전반에 걸친 意識을 개혁한다는 각오하에 정부와 業界가 해묵은 관행이나 풍토를 과감히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또한 대내외적으로 建設業의 구조 및 秩序의 획기적 전환이 불가피한 시점에 처하여 있으므로 금번 대책을 계기로 하여 부실공사의 방지는 물론, 나아가 건설산업의 구조를 高度化하고 국제경쟁력을 재고할 수 있는 産業調整次元으로까지 발전되도록 하겠음.

금번 대책은 작업과정을 통하여 關聯部處 및 업계간의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친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關聯部處의 유기적인 협조와 업계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대책의 효율적인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질서지켜 민주시민 차례지켜 문화국민”